

장학금 관리 규정

제정 1993. 3. 10. 개정 1994. 1. 13.
개정 1997. 6. 30. 개정 1998. 7. 24.
개정 1999. 6. 30. 개정 2001. 3. 10.
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 라 한다) 학칙 제69조 제1항에 의거 장학생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종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교외의 각종 장학단체나 개인 등이 기탁하는 장학금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장학위원회) 1. 장학금 지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

2.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학부·학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3. 본 위원회는 장학기금조성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장학금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나. 장학금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 다. 장학금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장 장학금 선정 및 종류

제5조(장학생 선정 시기) 장학생은 학기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장학생은 각 장학단체로부터 장학생 추천 의뢰가 있을 때 즉시 선정한다.
2. 면제 장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 전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생 선정) ① 면제 장학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입학성적 또는 등록 직전학기 이수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2. 법령에 의한 우선 면제 장학생
 3. 기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
- ② 근로·봉사 장학생 및 대여자장학생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③ 급여장학생은 장학금 지급기관의 선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내 장학금

1. 성적우수 장학금 : 중암장학금, 대경특별장학금
 - 신입생 -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 재학생 - 성적우수 장학금, CO-OP교육 성적장학금
2. 봉사장학금
3. 근로장학금
4. 보훈장학금
5. 도천장학금
6. 다솜장학금
7. 대경장학금
8. 교직원장학금
9. 저소득층장학금
10. 면학장학금
11. 장애우장학금
12. 연계교육과정장학금
13. 캠프, 본교대회수상자장학금
14. 특기자장학금
15. 산업체면학장학금
16. 만학도장학금
17. 성인재직자장학금
18. 전문대졸자장학금
19. 산업체위탁장학금
20. 자격증소지자장학금
21. 특별장학금

② 교외 장학금

1. 대구은행장학금
2. 보훈장학금
3. 군장학금
4. 국가 장학금
5.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6. 영풍문화재단 장학금

제 4 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8조(장학금 지급내용) 제7조 1호의 교내 장학금 지급액은 매 학기 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수혜기간) 성적우수 장학금은 통산 2년제는 4학기(2년), 3년제는 6학기(3년), 4년제는 8학기(4년)를 초과하지 못하며, 매 학기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이중수혜금지) 근로 및 봉사 장학생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1인이 이중수혜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단,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제11조(장학금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해당학기 장학금을 받고 휴학, 자퇴, 제적 및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단, 성적우수 장학금은 휴학 시 제외됨)
2.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3.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